(재)제주콘텐츠진흥원 공고 제2026-215호

『2026 제주 콘텐츠 물류비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주 물류비 지원사업」 사업추진에 따른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1. 20. (재)제주콘텐츠진흥원

1. 사업목적

○ 다각적 마케팅 및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 촬영 유치가능성을 제고하고, 제주 실내영상스튜디오 활성화 전략을 통한 도내 지역경제 유발효과 기대

2. 사업개요

○ **공 고 명**: 2026 제주 콘텐츠물류비 지원사업

○ **접수기간**: '26년 11월 20일(목) ~ 12월 2일(수) 18:00까지

○ **지원대상**: 2026.01.01 ~ 2026. 12. 2까지 도내에서 촬영한 영상물(예능, 장편극영화, 다큐멘터리 등) 중 물류비가 발생된 작품

○ **지원내용**: 작품당 최대 10백만원(2~4개 작품 지원)

○ **지원방법**: 정산 증빙 검토 후 환급 지원

○ **지원분야**: 도외에서 도내로 영상물 촬영을 위해 사용된 물류비

- 물류비용(운송비, 장비차량 등)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임대작의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

※ **확인사항**

· 실험영화, 뉴스, 시사다큐멘터리 등 지원불가, **최소 런닝타임 60분 이상 작품**

· 투자 및 배급계약서 또는 방송, 플랫폼 편성이 완료된 작품(스튜디오 임대 작품의 경우 제외)

· 프로덕션 단계의 작품만 인정(사전헌팅 등을 위한 지원은 불가)

· **<2026 제주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다양성영화제작지원 사업>과 동일 지출 항목에 대해 중복지원 불가**

· 정산검토 과정에서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상세기준

구분	상세기준
신청대상	국내 영화/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한 제작사 대표 또는 프로듀서
제외대상	1.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주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4.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또는 영화인 신문고 등을 통해 각종 분쟁 중인 피신고인 5.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 중인 지원 대상자가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6. 작품 내 시나리오, 음원, 상표권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분쟁 중인 경우

○ 세부 정산항목 인정범위

인정범위	▶ 제주도 프로덕션 촬영을 위해 사용된 물류비 일체 - 선박, 항공 운임 및 탁송비: 장비차량, 자재 운송, 스탭차량 등 - 세트 제작물 운송비: 도외 소재 세트 제작업체가 제작한 세트 및 구조물 등을 제주 촬영 현장까지 직접 운송하는 데 소요 되는 비용 - 스탭 개인 여비는 인정불가(단, 운송을 담당 스탭 운임비는 인정, 최대 2명) ※ 스탭 운임비는 물류 운반 날짜, 시간이 모두 동일해야함 ※ 제출한 증빙내역 검토하여 물류비로 인정이 불가한 경우, 지원금액에서 제외
증빙	▶ 영수증(카드 결제에 대한 승인번호가 기재되어야 인정), 세금계산서 등 ▶ 물류 택배인 경우, 운송장(인터넷 내역 가능) 증빙(*개인택배 인정불가) - 소품 구입 등 인터넷 배송의 경우 추가 배송료만 인정 ▶ 탑승권 또는 승선권(실제로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내용의 탑승권) - 탑승권 사본(사진), 모바일 탑승권 인정 ▶ 세부산출내역 ▶ 물류 세부내역 * 세부사항은 [서식참조]

3. 신청접수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제주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ofjeju.kr)에서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을 다운 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 붙임자료 참조)

○ **접수처(문의처)**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Tel: 064-735-0663 / E-mail: chae2836@ofjeju.kr

○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서류검토	→	④ 알림	→	⑤ 지원금 지급
사업공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제출서류 검토(정산서 등)		검토결과 알림 (지원금액 등)		정산 결과에 따른 지원금 청구 및 지급

○ **유의사항**

- 신청자 법인, 신청자 개인 통장을 이용한 계좌이체 된 비용만 인정
- 정산내역에 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관련 시 소요비용은 신청사 부담
- 지원작품이 제출한 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초상권 및 기타 저작권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진흥원 로고 및 텍스트 크레딧 삽입
-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세 불인정

4. 제출서류

○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신청 서류 리스트		
순번	내 용	양 식
1	**지원신청서 1부(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범죄 위반 등의 확인서**	붙임 참조
2	사업자등록증(제작업 신고 증빙용)	사본
3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 인감증명서(신청서 직인 기준)	
4	투자 및 배급계약서 또는 방송, 플랫폼 편성 계약서 1부(확인서 가능)	
5	**물류비 지출내역서** -「서식1」 (엑셀 등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자체양식 또는 서식참조
6	제작기획서(제작의도, 시놉시스, 배급·편성계획, 투자 및 배우캐스팅 등의 내용)	
8	최종본 시나리오와 도내 촬영 내용 발췌(올-로케이션 작품인 경우 발췌 생략 가능)	
9	제주 내 일일촬영계획표(회차별 사진 첨부 1~2장 내외)	자체양식

○ 선정 후 제출서류

<최종 지급 단계>

▶ 진흥원에서 정산자료 검토 후 최종지원금 통보 시 협약 단계 진행

▶ 협약 이후 아래 서류 제출

1. 청구서
2. 국세완납증명서(발급 유효기간 인정범위)
3. 지방세완납증명서(발급 유효기간 인정범위)
4. 통장사본
5. 촬영자료(스틸사진, 현장사진 등) 제출

※ 향후 작품의 개봉 및 공개 시점에 맞추어 홍보 자료(보도자료 등)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 정산 내역 제출 시 유의사항

<정산자료 증빙 제출서류>

1. 법인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제작비 지출 카드 앞면 복사본(유효기간 제외)
   ※ 카드지출 없을 시 불필요
2. 지출 내역 증빙 내용

카드지출	▶ 카드매출전표(법인카드, 제작비 카드 등) ▶ 도내소비액 예산서와 맞추어 매출전표별 번호 기입 후 사본 제출
계좌이체	▶ 사업자등록증, ▶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확인증 ▶ 수령 기업(대표자) 통장 사본 ▶ 계약 내용 증빙 서류

3. 정산 내역 서류 중 증빙적 해석이 어렵거나 미비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보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최하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 제작사가 부담

5. 협약체결 및 사후 관리사항의 조율

○ 작품 활용 및 조건에 대한 협약 체결 주요 내용

- 지원작품(영상물)의 공식포스터, 스틸컷 등 공익의 목적을 위한 홍보자료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진흥원”, “진흥원 협약기관” 이 제주와 관련된 비영리적 업무 일환으로 활용 예정(예시 : 보도자료, 촬영지 홍보, 진흥원 사업소개 브로슈어 등)

- 제주특별자치도와 진흥원 로고 및 텍스트 크레딧 삽입을 통한 제작 지원 사항 표기

작품크래딧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지원사실 명기(로고 삽입) ※크레딧 명기가 어려울시 상호협의 진행	Jeju 제주콘텐츠진흥원 JEJU CONTENTS AGENCY 2026 제주 콘텐츠 물류비 지원사업 지원작

- 기타 영상물 제작 지원 및 활용에 관한 협의 사항

6. 협약의 해지

○ 협약은 다음 각 사항에 따라 해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조치

1. 관리기관과 신청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2. 협약을 통해 지정한 기간 내에 작품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신청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작이 취소 또는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협약 이후 지원 제외 대상이거나 자격이 불충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7. 유의사항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

○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접수자(제작사 등)에게 있음

○ 협약사항 불이행 시 2년간 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제작사, 대표, 연출자, 프로듀서 등 관련자 포함)

※ 참여 제한 기준일 : 협약 해지일로부터 2년간